

◇ 대리인과 특허관리인

특허법상 대리란 무엇이며, 특허 관리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특허법상 대리란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신청 등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스스로가 밟는 대신에 대리인이라는 제3자로 하여금 절차를 밟게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의 종류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으로서는 통상대리인(제3자의 대리인)과 재외자의 대리인이 있는데, 이중 재외자의 대리인을 특허관리인이라고 한다.

특허관리인이라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제3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밟아주는 특허에 관한 대리인을 말한다.

특허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특허절차를 밟는 경우 번거로움을 피함으로써 특허청의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에 일체의 절차 및 특허법 등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판장을 대리할 수 있으나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이 통상의 대리인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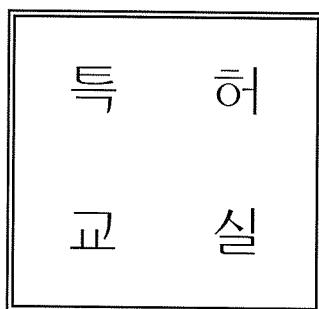
◇ 특허와 KNOW-HOW

특허와 KNOW-HOW의 차이는?

특허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KNOW-HOW란 공업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 자료, 경험으로 이를 창작, 개발, 제작 또는 체득한 자(전수 받은 자 포함)가 현재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차이점으로는 첫째, 특허는 발명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부여되지만, KNOW-HOW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점. 둘째, 특허는 특허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지만, KNOW-HOW는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도 있는 점. 셋째,



특허는 독점배타적으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지만, KNOW-HOW는 배타성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 넷째, 특허는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KNOW-HOW는 비밀을 유지하기만 하면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발명과 발견

발명이란 무엇이며, 발견과는 어떻게 다른가?

발명과 발견은 다 함께 새로운 것을 인간사회에 하나의 지식식견으로써 소개

되는 것이며,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발견에 의해 많은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발명이 발견을 촉진하는 예도 적지 않아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발견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맨처음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창작이라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발명중에 어떠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새롭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공업은 물론 농업, 광업, 수산업 등에서 생산 혹은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을 말하며,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같지 아니하고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같지 아니하면 신규한 발명으로 보며, 위의 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산업정책이나 공익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